

퇴직연금 지급청구서(퇴직 중도인출)

담당	팀장

■ 가입자정보

가입자명		실명확인번호 <small>(주민등록번호)</small>	
휴대폰		임직원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
입사일자		중간정산일자	
중간정산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미 적용 (자필기재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(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)		
입금계좌정보	금융기관명 :	계좌번호 :	

■ 퇴직청구

*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신청 시,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음을 **확인합니다** (자필기재)

퇴직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년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자 반환(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경우)		
지급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IRP 현금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IRP현물이전 ^{주1)} (당사 IRP로 수령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(만55세 이상, 세전 300만원 이하)		
퇴직일자		국민연금전환금	원
DB	지급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액 <input type="checkbox"/> 적립비율	잔여부담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) 원
	퇴직급여총액	세전 총 퇴직급여(위로금 등 포함) 원	기간급여총액 원
	지급요청금액	원	부담금계산일자 (시작일자 ~ 종료일자)
	회사지급액	원	납입예정일
	매도상품명	미기재시 낮은 금액 순으로 매도	

주1) 현물이전은 보유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, 현물이전 이외의 상품이 모두 현금화되는 날 전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. 현물이전 시 현금성자산은 IRP투자비율에 따른 상품 매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기 등록된 분할매수는 해지됩니다.

■ 중도인출(DC, 기업형IRP)

중도인출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구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금/임차보증금 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 이상 요양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난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연체(임금 감소, 재난)		
신청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액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 ^{주2)} (신청금액: 세전 _____ 원 / 매도상품명: _____)		
가입자부담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전액 중도인출만 가능. 연금보험료 등 소득·공제확인서 및 타사 연금 납입확인서 제출)		
중도인출 서약서 <small>* 해당사항 체크 후 본인서명 (인/서명)</small>	[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]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
	[무주택자 전세금/임차보증금 부담]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며,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함을 확인합니다.		
	[6개월 이상 요양]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1년간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였으며,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손의료보험금을 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받지 않았음, 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받았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할 것)을 확인합니다. (전년도 임금총액: _____ 원 X 12.5%) < (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의료비 합계: _____ 원)		

주2) 현금성자산이 부족한 경우, 105%에 상당하는 자산을 매도합니다.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
■ 임원(DC, 기업형IRP)

임원퇴직소득한도 ^{주3)}		회사지급액(위로금 등)	
2011/12/31 이전 한도계산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미제출(근무기간 안분 방식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출(2011/12/31까지 퇴직급여: _____ 원)		

주3) 임원퇴직소득한도 금액은 「소득세법 제22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, 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4」를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퇴직소득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회사로 반환되며,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가입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중도인출 시 임원은 전액 인출만 가능하며, 중도인출 지급일까지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인출 이후의 임원퇴직소득한도가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.

※ 유의사항

- 퇴직연금 지급 접수 이후 상품 운용지시는 불가(ETF 매매 포함)하며, 접수 이후 납입되는 부담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- 보유 상품 매도 기간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될 수 있습니다.
-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오류 작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
가입자명 _____ (인 / 서명) 회사명 _____ (인)

